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8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03월 31일 (화) 오전 0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대회의장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 사항

- (1) 감사보고
- (2) 영업보고
-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나.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23기 (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1 정관변경 신규대비표 참조)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김현승 신규 선임의 건

성명	출생 연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포함)
김현승	1979-11	1년	신규 선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前 Bain & Company, Manager 前 Unison Capital, Director 現 Bain Capital Private Equity 매니징디렉터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김윤홍 신규 선임의 건

성명	출생 연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포함)
김윤홍	1979-10	1년	신규 선임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Harvard Business School MBA 前 McKinsey & Company, Business Analyst/Associate 前 Citigroup Global Markets Asia (Hong Kong), Managing Director 前 CJ ENM 최고전략책임자

- 제4-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이성수 신규 선임의 건

성명	출생 연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포함)
이성수	1974-02	1년	신규 선임	서울대학교 경영학사 Santa Clara University Law School LLM 前 LG-EDS Systems Consulting 부문 前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법무법인 그루제일 변호사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5-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임상미 신규 선임의 건

성명	출생 연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포함)
임상미	1981-07	1년	신규 선임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 학사 前 감사원 前 선진회계법인 회계사 前 인덕회계법인 회계사 現 한길회계법인 감사본부 회계사

제6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5억)

제7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1억)

4. 경영 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 참고사항을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 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 행사 : 주주 본인의 신분증
- 대리 행사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 기재, 인감 날인 必), 인감증명서

7. 기타 사항

비용 절감을 위하여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16일

주식회사 에코마케팅
대표이사 김철웅 (직인생략)

기 존	개 정
<p>제28조 (이사의 수) 1.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 이사를 둘 수 있다.</p>	<p>제28조 (이사의 수) 1.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내로 하고, 사외 이사를 둘 수 있다.</p>
<p>제29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p>	<p>제29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p>
<p>제33조의2 (이사의 의무) 4. 이사는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3조의2 (이사의 의무) 4. 이사는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9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p>	<p>제39조 (감사위원회 구성) 1.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4. 감사위원회 위원 중 2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5.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7.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p>
<p>제40조 (감사의 선임)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p>	<p>제40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1.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 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p>	<p>5.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6.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p> <p>7.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p> <p>8.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p> <p>9.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p> <p>10.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3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1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p> <p>1.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p> <p>2.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3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41조 (감사위원회의 감사록)</p> <p>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42조 (감사의 직무)</p> <p>1.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p> <p>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이하 생략)</p>	<p>제42조 (감사의 직무)</p> <p>(삭제 2026.03.31)</p>
<p>제43조 (감사의 감사록)</p> <p>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43조 (감사의 감사록)</p> <p>(삭제 2026.03.31)</p>
<p>제44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p> <p>1.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2.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p>	<p>제44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p> <p>(삭제 2026.03.31)</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시행일)</p> <p>이 규정은 2026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p>